

『N Wallet 서비스 이용약관』

1. 개정시행일: 2017. 5. 21.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 2 조 (용어의 정리)</p> <p>①항 1호~15호</p> <p><생 략></p> <p>16호. "제휴사"란 "은행"과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"서비스" 또는 "부가서비스"를 "회원"에게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</p>	<p>제 2 조 (용어의 정리)</p> <p>①항 1호~15호</p> <p><현행과 같음></p> <p>16호. "제휴사"란 "은행"과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"서비스" 또는 "부가서비스"를 "회원"에게 제공하는 <u>하나금융그룹 관계사 또는 일반 기업을</u> 말합니다.</p>	<p>"제휴사" 의미를 명확하게 명시</p>
<p>17호 "N Wallet 카드"란 "회원"이 "N Wallet"에 충전된 "캐시넷"으로 "카드사"의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카드 또는 모바일 카드를 말합니다</p>	<p>17호 (삭제)</p> <p>"N Wallet 카드"란 "회원"이 "N Wallet"에 충전된 "캐시넷"으로 "카드사"의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카드 또는 모바일 카드를 말합니다</p>	<p>해당 서비스를 추진하려다 중단되었음</p>
<p>18호 "카드사"란, "은행"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"은행"을 대행하여 카드를 발급, 등록, 결제, 정산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.</p>	<p>18호 (삭제)</p> <p>"카드사"란, "은행"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"은행"을 대행하여 카드를 발급, 등록, 결제, 정산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.</p>	<p>해당 서비스를 추진하려다 중단되었음</p>
<p>17호 (신설)</p>	<p>17호</p> <p>"하나멤버스"란 "하나카드 주식회사"가 운영하고 "관계사"가 참여하는 통합멤버십 서비스를 말합니다.</p>	<p>"N Wallet"서비스 종료시 "하나멤버스"로 전환을 위한 용어정의 추가</p>
<p>18호 (신설)</p>	<p>18호</p> <p>"관계사"란 KEB하나은행, 하나카드, 하나금융투자, 하나캐피탈, 하나생명, 하나저축은행 등 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를 말합니다</p>	<p>"관계사" 의미를 명확하게 명시</p>
<p>19호 (신설)</p>	<p>19호</p> <p>"하나멤버스 서비스"란 "하나멤버스" 상에서 "하나멤버스 회원"에게 제공되는 일련의 서비스를 말합니다</p> <p>가. "관계사" 상품·서비스를 이용 시 "하나머니" 적립, 충전, 사용, 보내요, 주세요, ATM출금 등</p> <p>나. "제휴사" 포인트를 "하나머니"와 상호 전환·합산 사용 등</p> <p>다. "제휴사"가 "하나멤버스"에 제공하는 쿠폰의 구매·사용·선물하기 등</p> <p>라. "제휴사"가 제공하는 상품 등을 구매하기 위한 결제 등</p> <p>마. "하나멤버스"의 "회원"간 문자대화, "하나머니" 송금 등의 메신저, AR(증강현실) 서비스 등</p> <p>바. 기타 부가서비스</p>	<p>17조에 추가하여 "하나멤버스"에 대한 용어정의 추가</p>

20호 (신설)	20호 "하나머니"란 "하나멤버스"를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,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종인 포인트를 가리키며 "하나멤버스 이용약관"에 정한대로 적립, 충전, 전환 하나머니 등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됩니다.	17조에 추가하여 "하나멤버스"에 대한 용어정의 추가
<p align="center">제 6 조 (이용 정지 및 탈퇴)</p> <p>①~ ③ <생략> ④ 항 (변경) "회원"이 "서비스" 탈퇴 신청 시 "은행"은 "캐시넷" 잔액이 전액 "환불"된 경우에 한해 탈퇴 처리합니다. 단, "회원"이 "서비스" 탈퇴 시 "캐시넷" 잔액이 "환불 수수료" 미만으로 남아있을 경우 "캐시넷" 잔액의 "환불"은 불가능하며, "회원"은 "환불"없이 탈퇴할 수 있습니다.</p>	<p align="center">제 6 조 (이용 정지 및 탈퇴)</p> <p>①~ ③ <현행과 같음> ④ 항 "회원"이 "서비스" 탈퇴 신청 시 "은행"은 "캐시넷" 잔액이 전액 "환불" 또는 "하나머니"로 재충전된 경우에 한해 탈퇴 처리합니다. 단, "회원"이 "서비스" 탈퇴 시 "캐시넷" 잔액이 "환불 수수료" 미만으로 남아있을 경우 "캐시넷" 잔액의 "환불"은 불가능하며, "회원"은 "환불" 없이 탈퇴할 수 있습니다.</p>	회원이 탈퇴 신청 방법 추가로 손님 자율성 증대
⑦ 항 (신설)	⑦ 항 "회원" 앞 사전 통지한 "N Wallet" 서비스 종료시점까지 보유한 "캐시넷"은 은행이 별도 정한 시점에 "하나머니"로 재충전되고, 재충전이 완료될 경우, 별도의 절차 없이 "N Wallet" 회원은 자동 탈퇴됩니다.	N Wallet 종료시 "캐시넷"을 "하나머니"로 전환할수 있는 근거 마련 (하나멤버스 既 가입자에 한함)
⑧ 항 (신설)	⑧ 항 제7항에 따라 "캐시넷"을 "하나머니"로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"하나멤버스"에 가입해야 하며 세부내용은 "하나멤버스 서비스 약관"에 따릅니다.	N Wallet 종료시 "하나멤버스"로 회원 이전 할수 있는 근거 마련
<p align="center">17조 (N Wallet 카드의 발급 및 등록) 18조 (N Wallet 카드의 관리) 19조 (N Wallet 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) 20조 (N Wallet 카드의 비밀번호) 21조 (N Wallet 카드의 이용 및 제한) 22조 (N Wallet 카드의 위·변조,양도 등에 대한 책임) 23조 (N Wallet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)</p>	17조 ~ 23조 삭제	해당 서비스를 추진하려다 중단되었음
<p align="center">24조 (대리 및 보증의 부인) 25조 (분실, 도난신고와 보상)</p>	<p align="center">17조 (대리 및 보증의 부인) 18조 (분실, 도난신고와 보상)</p>	17~23조 삭제에 따른 조항변경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6조 (은행의 책임 및 면책)</p> <p>①~ ② <생략></p> <p>③ 항 (일부 변경)</p> <p>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천재지변, 전쟁, 테러, 또는 "은행"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, 화재,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</p> <p>2.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</p> <p>가. "서비스" 등록정보, 이용정보의 유출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</p> <p>나. 패스워드 유출로 인한 사고</p> <p>다. "회원" 가족, 동거인에 의한 사고 또는 이들이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</p> <p>라. "회원"이 "서비스"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</p> <p>마. "서비스" 등록정보, "서비스" 사용을 위한 정보 등을 위/변조자에게 제공한 경우</p> <p>바. "서비스"의 부정사용 조사를 위하여 "은행"이 요청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조 (은행의 책임 및 면책)</p> <p>①~ ② <현행과 같음></p> <p>③ 항</p> <p>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"회원"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"회원"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"서비스" 등록정보, 이용정보의 유출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</p> <p>2. 패스워드 유출로 인한 사고</p> <p>3. "회원" 가족, 동거인에 의한 사고 또는 이들이 관련되어 발생한 사고</p> <p>4. "회원"이 "서비스"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</p> <p>5. "서비스" 등록정보, "서비스" 사용을 위한 정보를 위/변조자에게 제공한 경우</p> <p>6. "서비스"의 부정사용 조사를 위하여 "은행"이 요청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</p>	<p>'17.01.24일자 공정거래위원회 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에 따라 ③항 1호 삭제 및 이하 조항 일부 변경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7조 (이용시간 및 서비스 변경,중단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조 (이용시간 및 서비스 변경,중단)</p>	<p>17~23조 삭제에 따른 조항변경</p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8조 (약관의 개정 및 효력)</p> <p>① <생략></p> <p>② ~ ⑤ (조항 변경)</p> <p>② “은행”이 “약관”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본점, 영업점 및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(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“회원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합니다. 이하 이조에서 같습니다)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고 “회원”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기간 서비스 내 SMS, Push Message,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“회원”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“약관”을 변경할 때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(최소 1개월 이상 게시)합니다.</p> <p>③ “회원”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“약관”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“약관”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단, 전단의 기간 안에 “회원”의 이의가 도달하지 않으면 “회원”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④ “회원”은 “약관”에 동의함으로써 “서비스”의 이용자로서 “약관”을 준수할 책임을 집니다.</p> <p>⑤ “은행”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『“회원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』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1조 (약관의 개정 및 효력)</p> <p>① <현행과 같음></p> <p>② “은행”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(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“회원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)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“회원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“회원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“은행”은 “회원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.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④ “은행”이 제2항 및 제3항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“회원”이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</p> <p>⑤ “회원”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</p>	<p>’17.01.24일자 공 정거래위원회 發 전자금융거래 기 본약관 개정 반영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9조 (준용규정 및 관계법령) 30조 (관할 법원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2조 (준용규정 및 관계법령) 23조 (관할 법원)</p>	<p>17~23조 삭제에 따른 조항변경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